

중국,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개정 시행

(2012. 2. 23.)

상해사무소

□ 2007년 이후 4년만에 지도목록 개정

-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1995년 처음 제정된 이후 4차례 수정되었음.
- 이번에 개정된 지도목록은 2011년에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
-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은 장려항목, 제한항목 및 금지항목으로 구분

□ 지도목록 개정 배경

- 외자활용 정책 전환 : 양적 성장 → 질적 성장
 - 12·5규획(2011~2015년)에서 중국은 기존의 외자를 활용한 고속성장 정책에서 탈피하여 선별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경제정책 전환
-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
 -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무분별한 외자유치로 나타나고 있는 생산설비 과잉 예방

○ 신홍전략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

- 12·5 계획 기간중 신홍전략산업, 신에너지산업, 저탄소산업, 문화산업 등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보

□ 주요 특징 및 개정내용

○ 장려항목 증가

-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하이테크, 신공예, 신재료, 신장비 제조업을 장려항목에 추가

- 집중육성 대상인 신홍전략산업을 장려항목에 추가

- 금속산업 : 항공, 우주, 자동차, 오토바이 등의 경량화 소재 제조
- 전문설비 제조 : 전기자동차용 건전지 생산설비 설계 및 제조
- 교통운수설비 제조 :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
- 섬유 제조 : 기능성, 환경보호 및 특수 의복 제조
- 전기기계 제조 : 첨단기술 환경보호형 전지 제조
- 통신설비 제조 : IPv6에 기초한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설비, 단말기 설비, 소프트웨어, 반도체 개발 및 제조

※ 신홍전략산업 : 중국정부는 차세대 정보기술,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, 신에너지, 바이오 신약, 첨단장비 제조, 신소재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7대 신홍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 비중을 20% (2010년 3%)로 제고시킬 계획임.

- 서비스산업 현대화 관련 업종 장려항목에 추가

- 창업투자기업, 지적재산권 서비스, 가사서비스, 직업훈련교육 업종

- 고속디지털 인쇄기 등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고급제품 제조를 장려항목에 추가

○ 제한항목 및 금지항목의 감소

- 금융리스업 및 외환중개대리업 제한항목에서 제외
-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산업을 제한항목에서 제외
 - 탄산음료 제조
 - 1회용 주사기, 수맥기, 수혈기 및 혈액 포장재 제조
 - 컨테이너 제조
 - 중저급 초음파 디스플레이 제조
 - 도시 가스관·배수관 공급망 건설 및 경영
-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항목에서 제외

○ 투자비율 또는 합자·합작 제한 완화

- 기초통신업무 외자비율 제한 35% 이하에서 49%이하로 완화
- 320마력 이하 굴삭기, 30톤 이하 액체압력 굴착기, 6톤 이하 웨도식 선적기, 220마력 이하 지게차 제조에 있어서 합자 또는 합작 투자 요건의 해제

○ 기타

- 완성차 제조, 석탄원료 화공제품 제조를 장려항목에서 제외
 - 이미 산업 성숙기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, 과잉투자 방지를 통한 상산과잉 조절 의도

- 골프장 건설의 금지항목 유지 및 별장 건설의 금지항목 추가
- 부동산 과열과 위안화 평가절상에 편승한 외국 투기자본의 고급 부동산부문 유입 사전차단 목적
- 서부대개발, 동북지역 공업기지 진흥을 위한 산업차별화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'중서부지구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'을 개정

참 고 :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(2011년 개정)